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6 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김선교·박수민·박준태

이인선 • 이헌승 • 서일준

구자근 · 김상훈 · 박충권
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정부가 지 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·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 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 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 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3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 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그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·법령 등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제46조의2제3항 및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·절차·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

제6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	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		
법 일부개정법률	법 일부개정법률		
<u><신 설></u>	제46조의3(장애인·고령자 등의		
	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		
	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		
	관은 장애인・고령자 등의 지		
	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		
	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		
	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		
	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		
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	
	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		
	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		
	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		
	<u>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</u>		
	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		
	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		
	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		
	에 협조하여야 한다.		
	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	
	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		
	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		
	<u>인정하면 장애인·고령자 등의</u>		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

- ① (생 략)
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다.
- 1. ~ 3. (생략)

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·법령 등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제4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 주기・절차・방법 및 결과 공
 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 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

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
- _____
- _____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4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68조(자료 제출의 요청) ① 과 제68조(자료 제출의 요청) ① ---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 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 <신 설>

3. ~ 6. (생략)

② (생 략)

4.	, 「i	1용상	연령차병	별금지	및
	고령	자고용	촉진에	관한	법
	률」	제2조	:제1호에	따른	卫
	<u>령자</u>				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4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의 실시
- 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